

소 장

- 원 고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주)KEB하나은행본점)
대표이사 함영주
 2.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대경빌딩 신한은행 본점)
대표이사 위성호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은행본점)
대표이사 손태승
 4.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기업은행)
은행장 김도진
 5.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여의도동,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정완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서초동, G5센트럴프라자)
담당변호사: 김주영, 서정, 송성현, 박필서, 임진성
구현주, 최지숙, 조계창
(전화: 02-537-9500 팩스: 02-564-9889)
- 피 고
- 주식회사 골프존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도룡동, 골프존대전사옥)
대표이사 박기원

주주총회결의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이하 ‘피고 회사’)은 골프용품 제조, 판매, 서비스업, 골프연습장, 골프장사업,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3. 3. 설립된 회사입니다(갑 제1호증 골프존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들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아래 표와 같이 증권투자신탁(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 발행주식 6,275,415주 중 소계 1,159,186주(총 발행주식의 약 19% 정도)를 보유한 주주들입니다(갑 제2호증 원고들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원고들 주식 종목별 펀드별잔량현황 각 참조).

원 고	증권투자신탁(펀드)명	주식수
주식회사 하나은행	KB밸류포커스	605,317주
주식회사 신한은행	KB중소형주포커스	261,079주
주식회사 우리은행	KB마이플랜배당주	288,667주
주식회사 신한은행	KB장기플랜	3,791주
주식회사 기업은행	KB주주가치포커스	269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KB밸류초이스30	63주
소 계		1,159,186주

2. 피고 회사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5호 의안(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

가. 이 사건 결의의 배경 (피고 회사의 대주주 리스크)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구 주식회사 골프존뉴딘, 이하 ‘골프존뉴딘’)입니다(갑 제4호증 골프존뉴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골프존뉴딘은 2000. 5.경 설립된 골프장운영, 스크린골프사업, 골프장 유지보수사업, 골프유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2011. 5. 20. 코스닥시장 상장), 2015. 3. 1. 골프존뉴딘은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투자, 지주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골프존뉴딘과 기존 스크린골프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그리고 골프유통사업을 담당하는 (주)골프존유통으로 분할하였습니다. 2017. 12. 31.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1,272,696주(20.28%) 보유하고 있으며, 김원일, 김영찬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하면 보유 주식수는 3,376,756주(53.81%)에 이릅니다(갑 제5호증 골프존 제3기 사업보고서 중 일부 참조).

피고 회사는 2015. 3. 분할 설립 이후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에게 배당이외에 브랜드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금액은 2016. 기준 총 145억 원에 이릅니다. 이중 브랜드로열티는 72억 원으로 2016. 피고 회사의 매출액 2,170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는 2018.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국내 지주회사들의 브랜드로열티율 중 가장 높은 수치로서, 2위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대비해서는 4.4배, 대기업 평균과 대비해서는 무려 11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행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피고 회사가 최대주주인 지주사에게 과도하게 많은 브랜드로열티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언론기사들 참조).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기업분할을 통해 대주주로부터 분사된 이래 지속적으로 대주주 리스크(대주주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가 훼손

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격적으로 최대주주의 적자사업부(赤字 事業部)를 양수하는 영업양수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1) 이사회 전격적인 영업양수결의

피고 회사는 2018년도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바로 앞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격적으로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의 적자 사업부인 조이마루 사업부의 양수도를 결정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이사회 의사록 참조).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 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8호증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참조).

1. 양수영업		조이마루 사업부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조이마루 사업부 일체(골프아카데미사업, 멤버십 사업, 임대사업과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및 일체의 부대시설)		
3. 양수가액		94,893,364,495원		
- 재무내용		양수대상(A)	피고 회사 전체(B)	비중(A/B)
	자산	79,459,658,442원	253,672,418,837원	31.32%
4.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8. 3. 8.		
	양수기준일	2018. 4. 1.		
5. 거래상대방	회사명	골프존뉴딘		
	관계	최대주주		
6. 양수대금지급		6월말 이내 3회 분할지급 (계약금30%, 중도금30%, 잔금40%)		
7.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예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8. 3. 23.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은 양수가액이 약 949억 원으로서, 피고 회사 총 자산 약 2,536억 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금액이므로, 피고 회사에 있어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1) 제434조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양수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피고 회사도 2018. 3. 8.자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영업양수도는 서면통지로서 그 즉시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상정

피고 회사는 위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로 당일인 2018. 3. 8. 각 주주들에 대하여 2018. 3. 23. 금요일 오전 9시 대전 유

1)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성구 테크노11로 13(탑립동)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제3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으로 제5호 의안인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을 포함시켰습니다(갑 제9호증 주주총회소집공고 참조).

(3)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및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통과

피고 회사는 2018. 3. 23. 금요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 테크노11로 13 (탑립동)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업양수도거래의 상대방이자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골프존뉴턴의 의결권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관하여 아래 박스와 같은 내용의 표결을 통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갑 제10호증 인증서(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갑 제11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표결현황,³⁾ 갑 제13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결과 각 참조).

- 발행주식총수 : 6,275,415주(총 주주수 5,464명) - 의결권없는 주식수 : 2,945주(자기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수 : 6,272,470주 - 정기주주총회 참석 총 주식수 : 5,151,899주(74명), 82.14% -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대한 특별결의요건 및 찬성주식수		
승인요건	참석의결권(5,151,899)의 2/3	발행주식총수(6,272,470)의 1/3
	3,434,600주	2,090,824주
찬성 주식수	3,616,013주	
비율	참석의결권의 70%	발행주식총수의 57.6%

3) 위 갑 제11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표결현황은 피고 회사 측(골프존뉴턴홀딩스 재무기획팀 이도영)에서 직접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입니다(갑 제12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표결현황 제공 관련 이메일 참조).

즉, 피고회사는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이 보유한 1,272,696주를 참석의결권수(5,151,899주)와 찬성주식수(3,616,013주)에서 그대로 포함시켜 참석의결권의 2/3 이상(약 70%)의 찬성으로 제5호 의안을 통과시켰는 바, 만약 골프존뉴딘의 의결권을 배제하였더라면 의결권이 있는 참석주식수는 3,879,203주가 되고(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찬성주식수는 2,343,317주가 되어 2/3에 못 미치는 약 60.04%의 찬성으로 의안이 부결되었을 것임이 계산상 자명합니다.⁴⁾

3. 이 사건 결의의 문제점

가.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영업양수거래의 부당성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조이마루 사업부 영업양수거래는 최대주주의 적자사업부를 고가에 양수하는 거래입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최대주주가 핵심사업부인 스크린골프 사업을 분할해서 상장한 회사이며, 조이마루 사업부는 최대주주가 직접 운영해 온 사업로서, 골프존 기념사업에 불과합니다. 실제 조이마루 사업부는 아카데미, 연습장, 임대사업 등을 내세우며 3년이 지났지만, 매출액은 46억 원에 그치고, 연간 감가상각비만해도 60억 원에 이르는 등 수익가치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적자사업부라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의 4 언론기사, 갑 제8호증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각 참조).

4) 피고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는 주주별 찬반현황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결내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위 의안에 대하여 참석 주식수 5,151,899주의 2/3에 해당하는 3,434,600주를 초과하는 3,616,013주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1,272,69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의 주식수를 가산하지 않고는 5,151,899주라는 참석 주식수도 나올 수 없으므로(5,151,899주에 1,272,696주를 더하면 발행주식 총수인 6,275,415주를 초과합니다), 골프존뉴딘의 주식수를 참석의결권수와 찬성의결권수에 가산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 사업부인 조이마루 사업부를 피고 회사는 최대주주인 골프존 뉴딘으로부터 무려 949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업양수도거래는 피고 회사의 현금성 자산 949억 원을 지주회사에 고스란히 지급하는 부당한 거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⁵⁾

나. 이 사건 결의의 결의방법상의 하자 및 위법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영업양도·양수 등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의 주주라면 그 주주는 위 결의에 관하여 회사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위 결의에 대하여 위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참고자료 1. 주식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114쪽,⁶⁾ 참고자료 2. 한국상사법학회 발간 주식회사법대계 II. 155쪽⁷⁾ 참조).

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⁸⁾도 같은 취지에서 **특별**

5) 피고 회사는 조이마루 사업부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를 거쳤다고 하지만, 계속기업의 가치를 평가 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자산접근법을 이용하였는바, 만약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를 감안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면 무려 949억 원이라는 양수대가는 도저히 도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 주식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114쪽 중 “예를 들어, 회사와 주주 사이의 영업양도, 기타 상법 제374조 소정의 계약을 함에 필요한 결의를 할 때의 그 주주, 주주인 이사에 대한 면책결의를 할 때의 그 주주 등은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를 취득, 부담, 면제받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부분 참조

7) 한국상사법학회 발간 주식회사법대계 II 155쪽 “제374조가 규율하는 영업양도·양수, 영업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손익공동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는데, 그 거래의 일방이 주주인 경우 그는 이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부분 참조

8)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중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데,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양도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합작회사의 대주주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대주주를 위 규정 소정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 참조

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
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
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결의방법
상의 하자 내지 법령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상법 제376조 제1항9)에 따른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족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결의가 불공정하다거
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은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1. 주식상
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116
쪽,10) 참고자료 2. 한국상사법학회 발간 주식회사법대계 II. 157쪽,11) 참고
자료 3. 이철송 회사법강의 522쪽12) 참조).

이러한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
주주총회 부의안건 중 제5호 의안인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있
어 거래상대방인 골프존뉴딘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정한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골프존뉴딘은 위 조이마루 사

- 9)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
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0) 주식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116쪽 중 “특별이해관계가 있
는 주주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만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부분 참조
- 11) 한국상사법학회 발간 주식회사법대계 II 157쪽 “특별이해관계인 참여하여 성립한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분 참조
- 12) 이철송 회사법강의 522쪽 “4) 이해관계 존재의 효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하며, 그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371조 2항).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가 된다(376조 1항).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
였다는 사실로 족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결의가 불공정하다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은 요
하지 않는다.” 부분 참조

업무 양수승인의 건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발행주식 1,272,696주(지분율 20.28%)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골프존뉴딘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석하여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위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만약 골프존뉴딘의 보유의결권을 위 양수승인의 건에 관하여 참석의결권수와 찬성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동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이 있는 참석주식수는 3,879,203주가 되고, 찬성주식수는 2,343,317주가 되어 2/3에 못 미치는 약 60.04%의 찬성으로 의안이 부결되었을 것임이 계산상 자명합니다(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가 정족수, 결의요건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하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¹³⁾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5호 의안(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결의에 대해서는 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방법상의 하자 내지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중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참조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5호 의안(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결의는 그 내용상의 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방법상의 하자 내지 위법이 존재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열람용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골프존 법인등기부등본
2. 갑 제2호증 원고들 법인등기부등본
3. 갑 제3호증 원고들 주식 종목별 펀드별잔량현황
4. 갑 제4호증 골프존뉴딘 법인등기부등본
5. 갑 제5호증 골프존 제3기 사업보고서 중 일부
6. 갑 제6호증의 1 각 언론기사들
7. 갑 제6호증의 2 각 언론기사들
8. 갑 제6호증의 3 각 언론기사들
9. 갑 제6호증의 4 각 언론기사들
10. 갑 제7호증 이사회 의사록
11. 갑 제8호증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12. 갑 제9호증 주주총회소집공고
13. 갑 제10호증 인증서(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14. 갑 제11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표결현황
15. 갑 제12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표결현황 제공 관련 이메일
16. 갑 제13호증 골프존 제3기 정기주주총회결과

첨 부 서 류

1. 별지
2. 참고자료 1.주석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114, 116쪽
3. 참고자료 2.한국상사법학회 발간 주식회사법대계 II. 155, 157쪽
4. 참고자료 3.이철송 회사법강의 522쪽
5. 소송위임장
6. 담당변호사지정서

2018.04.25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서정

송성현

박필서

임진성

구현주

최지숙

조계창

대전지방법원 귀중

열람용